

심사보고서

충청북도 국기 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국기 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968
----------	-----

2022. 1. 19.(수)
행정문화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 : 이옥규 의원 등 8인

나. 발의일자 : 2022년 1월 10일

다. 회부일자 : 2022년 1월 11일

라. 상정일자 : 2021년 1월 19일

- 제39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: 상정·의결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 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이옥규 의원)

가. 제안사유

○ 법령의 명칭에 대한 약칭을 정의하지 않고 약칭을 사용한 것을 전
체법령 명칭으로 변경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인용문구의 띄어쓰기 정정(안 제1조)

- “널 리” → “널리”

○ 약칭 정의(안 제3조)

- “법이 정한 국기게양일” → “「대한민국국기법」(이하 “도”라 한다)이 정한 국기 게양일”

3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: 남범우)

○ 이번 개정조례안은 주요내용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인용법령 명칭을 정정하고,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를 정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○ 「충청북도 국기 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 국기 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국기 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널 리”를 “널리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이 정한 국기게양일”을 “「대한민국 국기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이 정한 국기 게양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대한민국국기법」 제8조에서 위임된 태극기의 계양일을 지정하여 태극기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정신과 가치를 <u>널리</u>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3조(국기의 계양일) ① <u>법이</u> 정한 국기계양일 이외에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국기 계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	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대한민국국기법」 제8조에서 위임된 태극기의 계양일을 지정하여 태극기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정신과 가치를 <u>널리</u>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3조(국기의 계양일) ① 「<u>대한민국국기법</u>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이 정한 국기 계양일 이외에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국기 계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

관련법령 발취

□ 대한민국국기법

제8조(국기의 게양일 등) ① 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「국경일에 관한 법률」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국경일
2. 「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」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념일 중 현충일 및 국군의 날
3. 「국가장법」 제6조에 따른 국가장기간
4. 정부가 따로 지정한 날
5.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

제12조(국기선양을 위한 사업의 지원) 국가는 국기선양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·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

○ 첨부제외 관련규정

-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(비용추계서 작성대상)제4항 제1호

○ 사 유

- 의안의 개정 내용이 약칭에 대한 정의 없이 약칭을 사용하여 법령을 알 수 없게 된 것을 전체 법령명칭을 사용하는 것으로 의안의 내용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며,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.